



제305회 정례회

2011.12.01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0일

3. 제안이유

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□ 취득

(단위 : m², 천원)

기관명	구 분	사 업 명	수 량	금 액
충청북도교육청	건물	대소금왕고 교사 신축	9,256.30	20,282,076
	건물	충북체고 이전 교사 신축	5,257.00	24,641,211
청주교육지원청	건물	죽림초 교사 증축	1,203.78	2,793,268

기관명	구 분	사 업 명	수 량	금 액
음성교육지원청	토지	가칭) 본성초 설립부지 취득	13,245.00	780,000
	토지	가칭) 본성중 설립부지 취득	14,479.00	840,000
합 계		5건	43,441.08	49,336,558

①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

- 신축위치 :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
- 신축면적 : 9,256.3m²
- 신축금액 : 20,282,076천원
- 예산현황 :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: 908,800천원(설계비) + 2012년도
본예산 : 19,373,276천원, 합계 : 20,282,076천원
- 사 유 :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

②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

- 신축위치 :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
- 신축면적 : 5,257m²
- 신축금액 : 24,641,211천원
- 예산현황 :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: 2,041,800천원(설계비) + 2012년
도 본예산 : 22,599,411천원, 합계 : 24,641,211천원
- 사 유 :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교사 신축

③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

- 증축위치 :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
- 증축면적 : 1,203.78m²
- 증축금액 : 2,793,268천원
- 사 유 : 학급수 증가(유치원 2학급, 초등 8학급)에 따른 교사 증축

④ 가칭) 본성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

- 재산위치 :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-1번지
- 취득면적 : 13,245m²
- 취득금액 : 780,000천원
- 사 유 :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 신축

⑤ 가칭) 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

- 재산위치 :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번지
- 취득면적 : 14,479m²
- 취득금액 : 840,000천원
- 사 유 :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 신축

5. 검토의견

- 본 관리계획안은 음성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진천·음성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초·중·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신설하고,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학급 수 증가로 죽림초의 교사를 증축하며, 열악한 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청주시내에서 진천 문백면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.
- 사안별로 살펴보면, “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”은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(2011. 5. 13.)에서 “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계획안”을 원안의결 하였으며,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, 설계비, 용역비 등으로 501,819천원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임.
 - ※ 2012년 본예산 편성액: 193억 7,327만 6천원(토목비, 교사 및 급식소 건축비, 감리비, 부대비)
- “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” 또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(2011. 5. 13.)에서 이전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,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, 설계비, 용역비 등으로 3,880,800천원이

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임.

※ 2012년 본예산 편성액 : **225억 9,941만 1천원**(토목비, 교사 및 급식소 건축비, 감리비, 부대비)

○ “**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**”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구 내에 총 1,373세대의 공동주택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3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4학급 640명에서 2013년 34학급 9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마련 및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.

○ “**가칭)본성초, 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**”은 진천·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,500여세대가 입주예정이고, 이 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신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설립부지 취득은 적절하다고 생각됨.

※ 2012년 본예산 편성액 : **28억 1,720만원**(초·중 부지매입비, 설계비)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0.2.4>

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

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[전문개정 2009.4.24]

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0.8.6>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 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2.6]